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1나34153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김나영, 김정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정원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의, 담당변호사 박종익

변 론 종 결 2023. 8. 10.

판 결 선 고 2023. 9. 7.

제1 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7. 선고 2020가소18409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 2017. 6. 12. 원고는 C의 소개로 피고의 부친 D에게 2천만 원을 이자 월 2.5%(매월 말일 지급), 변제기 2018. 5.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 같은 날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증서 2017년 제350호)가 작성되었다.

○ 2017. 6. 8.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 D은 2017. 11. 29. 공증인가 법무법인 E에서 '원고는 2017. 11. 29. D에게 7천만 원을 대여하고 D은 이를 차용하였다. 2020. 1. 20.까지 지불하기로 한다. 이자는 없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증서 2017년 제784호)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21. 3.경 C에게 제784호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5, 11, 1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제출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와 D은 제784호 공정증서 채권액은 이 사건 대여금 2천만 원과 추가로 빌린 2천만 원 합계 4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을 합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점, ② 반면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외에 피고에게 제784호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 7천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는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 못 한 점, ③ 원고는 C에게 제784호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양도한 경위에 관하여도 자세한 설명이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784호 공정증서 금액에는 이 사건 대여금(제350호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원고가 C에게 제784호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양도한 이상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훈, 판사 조미옥, 판사 홍순욱